



넥스오토

문서번호
NEX-BO-T-01

개정일: 2025-02

사용자보안지침

개정차수: 6

개정 이력



넥스오토

문서번호
NEX-BO-T-01

개정일: 2025-02

사용자보안지침

개정차수: 6

차수	제(개)정 일자	시행일자	주요 개정 내용
1	2017-09-13	2017-09-13	초도 제정
2	2023-12-01	2023-12-01	디오토 상호변경
3	2023-12-05	2023-12-05	소프트웨어 설치 절차 추가
4	2024-08-01	2024-08-01	넥스오토 상호변경
5	2024-08-01	2024-08-01	비밀번호 운영 절차 추가
6	2025-02-03	2025-02-03	비인가 소프트운영 절차 및 보안패치 운영절차 추가

목 차

1. 개요.....	3
1.1 목적.....	3
1.2 적용범위.....	4
1.3 책임 및 권한.....	4
2. 사용자 윤리.....	4
3. 사용자 보안업무 절차.....	5
3.1 PC 보안.....	5
3.2 소프트웨어 보안.....	6
3.3 모바일 기기 보안.....	7
3.4 전자메일 보안.....	7
3.5 정보자산관리.....	7
3.6 인터넷 보안.....	8
3.7 Clean Desk.....	9

	<h1>넥스오토</h1> <h2>사용자보안지침</h2>	문서번호 NEX-BO-T-01
개정일: 2025-02		개정차수: 6

3.8 비밀번호 운영..... 6

3.9 비인가 소프트웨어 통제 운영절차.....7

3.10 보안패치 운영 절차.....7

1. 개요

1.1 목적

본 지침서는 사내 전 임직원 및 외부 협력업체 인원이 보안지침 및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, 회사의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하며 정보자산에 대한 위협행위(정보유출, 인터넷 침해사고 등)로부터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	<h1>넥소토</h1>	문서번호 NEX-BO-T-01
개정일: 2025-02	<h2>사용자보안지침</h2>	개정차수: 6

1.2 적용범위

당사 소유의 정보자산을 이용하는 임직원과 계약직, 임시직을 포함한 외주인력을 대상으로 한다.

1.3 책임 및 권한

1.3.1 전사보안책임자

- ① 회사의 정보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책임을 가진다.
- ② 본 지침서에 규정된 사항이 적절히 이행되는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.

1.3.2 기술보안담당자

- ① 사용자보안지침을 작성하며 주기적으로 개정, 검토하여 이를 전 회사 사용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.
- ② 사용자 PC에 대한 보안성을 평가하고 보안규정 미준수 사용자에게 개선하도록 요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.

1.3.3 정보자산관리 담당자

- ① 기술보안담당자와 견임할 수 있다.
- ② PC 등 개인용전산장비의 도입, 폐기 및 소프트웨어의 설치와 폐기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다.

1.3.4 PC 사용자

- ① 본인의 PC를 보호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. 본 지침에 수록된 내용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회사의 손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.
- ② PC의 비인가적 사용을 금하며, 임의의 포맷을 금한다.
- ③ PC의 정보보호 기능 설정 및 활용을 하여야 한다.
- ④ PC 내 기밀정보를 보호해야 한다.
- ⑤ 바이러스/악성코드 감염 예방을 하여야 한다.
- ⑥ 사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준수하여야 한다.

2. 사용자 윤리

- 회사의 업무시스템은 개인적인 사업목적이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, 회

	<h1>넥소토</h1>	문서번호 NEX-BO-T-01
개정일: 2025-02	<h2>사용자보안지침</h2>	개정차수: 6

사 업무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.

- 회사의 업무시스템 관련자료를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.
- 회사의 모든 정보자산은 관리자의 승인(확인)없이 외부로 무단반출 및 오픈하지 않는다.
-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 통신망을 통하여 무단으로 배포하지 않는다.
- 임직원은 스팸메일, 행운의 편지, 불건전한 저속한 메일(자료) 등 미풍양속을 해치거나, 물의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 또는 메일을 회사 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시키지 않는다.
- 회사 내에서 불건전한 인터넷 사이트를 열람 또는 파일을 다운로드 하지 않는다.
- 회사 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회사 및 기관, 개인에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타 회사나 기관의 비밀정보를 회사 내 시스템에 보관할 수 없다.

3. 사용자 보안업무 절차

3.1 PC 보안

- 3.1.1 개인 소유의 PC, Tablet PC, CD-Writer, 외장형저장장치, 데이터케이블 등 전산장비) 회사에 반입 및 사용할 수 없으며, 업무상 특정 목적이 있는 경우 승인절차에 의거 사용할 수 있다.
- 3.1.2 회사소유 자산은 개인목적으로 반출할 수 없으며, 출장, 이동영업 및 수리를 위한 반출은 승인절차 후 반출하여야 한다.
- 3.1.3 외부에 내부정보 제공 시는 반드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며, 미 승인된 정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.
- 3.1.4 손상된 PC의 복구를 위해 외부에 반출할 경우 저장장치에 업무와 관련된 주요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여 백업 후 제거해야 한다. 다만, 디스크의 장애로 데이터복구를 위해 반출할 경우에는 중요데이터 정보 소유자 입회 하에 디스크 복구 작업을 진행하여 정보유출 가능성을 차단한다.
- 3.1.5 PC 로그인 및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하여야 하고, 화면보호기 암호시간은 10분으로 설정한다.
- 3.1.6 패스워드는 영문자 및 숫자, 특수문자 포함 8자리 이상이어야 하며, 3개월 주기로 변경하여야 한다.
- 3.1.7 패스워드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패스워드를 만들지 않는다.
- 3.1.8 패스워드는 타인이 추측하기 어려운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, 본인만이 알고 있어

야하며 타인과 공유해서는 안된다.

- 3.1.9 패스워드는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, 노출 시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.
- 3.1.10 한번 사용된 패스워드는 6개월 간 재사용이 금지된다.
- 3.1.11 공유 폴더 사용 시에는 업무적으로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 가능하도록 공유 설정 후 사용하여야 하며, 사용 목적이 완료된 경우에는 공유 설정을 즉시 해제 하여야 한다. 공유 폴더 설정 시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Everyone, Domain Users 계정정보는 삭제하여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한다.
- 3.1.12 주기적으로 보안패치업데이트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3.1.13 병가나 장기 휴가와 같이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계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계정 사용중지를 서버 운영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.
- 3.1.14 공용PC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, 업무 자료는 사용 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.
- 3.1.15 공용PC는 보안 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.
- 3.1.16 공용 PC에는 보안문서를 저장할 수 없다.
- 3.1.17 노트북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으며, 특정 업무목적 으로 접근이 필요할 시는 네트워크보안지침을 따른다.
- 3.1.18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업무자료는 비밀번호 설정 또는 암호화(DRM 등) 조치를 통하여 분실/도난 사고 발생 시 비인가자의 불법 열람 및 외부 공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.
- 3.1.19 노트북은 절도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취급상 주의를 기울이며 안전케이블 또는 잠금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3.1.20 노트북을 출장 등의 사유로 회사 외부로 반출할 경우 해당 자산의 관리자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3.1.21 장비의 폐기 시는 회사에서 지정한 전용S/W 등을 통해 정보를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.

3.2 소프트웨어 보안

- 3.2.1 PC에는 회사 업무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만 설치한다.
- 3.2.2 지적재산권을 준수하여, 정품S/W만 설치되어야 하며, 불법 S/W사용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.
- 3.2.3 PC에 설치 시 바이러스나 악성코드처럼 동작할 가능성이 있는 비인가 S/W는 임의 설치 및 사용해서는 안되며, 업무적으로 사용이 필요할 경우 회사에 요청

	<h1>넥소토</h1>	문서번호 NEX-BO-T-01
개정일: 2025-02	<h2>사용자보안지침</h2>	개정차수: 6

하여 동일한 기능이 있는 공식 S/W를 구매하여야 한다.

- 3.2.4 사용중인 S/W에 보안상 문제가 발견 혹은 공지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문제 해결된 최신 프로그램이나, 패치를 적용하여야 한다.
- 3.2.5 회사에서 제공한 악성코드차단 솔루션을 설치하여야 하며, 최신 업데이트를 하여야 한다.

3.3 모바일 기기 보안

- 3.3.1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회사에서 보호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3.3.2 모바일 기기에 회사 내 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고, 기기간 연결매체를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여 승인되지 않은 모든 접속을 차단한다.
- 3.3.3 메일을 사용하여 회사정보를 수신하는 경우 첨부파일 저장을 제한한다.
(모바일 기기에 메일을 사용하여 회사정보를 수신하는 경우 첨부파일을 저장해서는 안된다.)

3.4 전자메일 보안

- 3.4.1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전자메일 서비스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.
- 3.4.2 전자메일 이용 시에는 바이러스나 절취와 같은 위험에 대해서 항상 인식을 하여야 하고, 발신인이 불분명한 의심스러운 메일은 열지 말고 삭제하여야 한다.
- 3.4.3 전자메일에 민감하거나 중요정보를 첨부할 경우에는 문서에 패스워드를 부여하거나 암호화하여 전송하여야 한다.
- 3.4.4 PC방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 장소에서는 업무에 관계되는 메일을 확인하거나, 수신 또는 전송하는 것은 긴급한 업무 처리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제하여야 한다.

3.5 정보자산관리

- 3.5.1 PC 내에 저장된 모든 문서(진행 중인 문서 포함)는 정보자산분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.
- 3.5.2 비밀 또는 극비 문서의 경우 반드시 보안이 적용된 별개의 저장매체를 통하여 백업을 실시하고,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.
- 3.5.3 보안 문서의 경우 이동 저장매체에 저장시 보안조치(암호화, 보안USB 등)가 수

	<h1>넥소토</h1>	<p>문서번호 NEX-BO-T-01</p>
<p>개정일: 2025-02</p>	<h2>사용자보안지침</h2>	<p>개정차수: 6</p>

반되어야 한다.

- 3.5.4 비밀 또는 극비 문서는 별도의 시건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.
- 3.5.5 극비 문서가 저장된 폴더는 공유할 수 없다.
- 3.5.6 PC내에 중요 자료를 저장할 경우에는 중복되게 보관하지 않는다. (무결성 유지)
- 3.5.7 보안 문서는 외부로 공중 네트워크(인터넷)을 거쳐 전송하는 것은 불허하며, 부득이 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3.5.8 허가 받지 않은 정보자산의 유출여부를 검사하는 경우 검사에 응해야 한다.
- 3.5.9 외부에 내부정보 제공 시는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며, 미 승인된 정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.
- 3.5.10 S/W 설치 및 사용
 - ① 사용자는 본인이 관리하는 PC에 대해서 업무에 필요한 S/W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.
 - ② 절 차
 - S/W 설치 신청서 작성(사용자) → 사용 용도 및 필요성 검증 (전산팀) → 자체 보유 S/W 즉시배포(이력관리) → 신규 프로그램 전산팀 필요수량 검토 후 업체 선정 정식 라이선스 구매 후 배포 (이력관리)

3.6 인터넷 보안

- 3.6.1 인터넷으로 통하는 모든 접근은 회사 보안 정책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증되고 승인된 회사의 보안시스템을 통해야 한다.
- 3.6.2 웹브라우저는 취약점이 보완된 최신 버전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3.6.3 회사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통신선을 개설하거나,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회사에서 지급한 PC 또는 서버를 임의로 인터넷에 오픈 할 수 없다.
- 3.6.4 사용자 정보가 암호화되지 않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.
- 3.6.5 회사 통신망의 성능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업무상 관련이 없는 인터넷 사용을 금한다. 인터넷 상의 특정 사이트에 대해서 회사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회사에서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다.
- 3.6.6 외부 커뮤니티 사이트(SNS 등)에 회사업무에 관한 내용을 등록하지 않는다.
- 3.6.7 불법적인 도박 사이트, 성인 사이트 등의 접속은 회사가 정책을 정의하고, 그 정

	<h1>넥소토</h1>	문서번호 NEX-BO-T-01
개정일: 2025-02	<h2>사용자보안지침</h2>	개정차수: 6

책에 따라 접속을 차단 하도록 한다. (예: 업무 시간에는 도박 및 성인 사이트 접속 금지 정책 등)

- 3.6.8** 회사는 인터넷의 FTP 사이트 및 웹하드 사이트를 통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을 차단할 수도 있으며, 업무적으로 필요한 사용자에게 대해서는 승인된 절차를 거쳐 사용하도록 한다.

3.7 Clean Desk

- 3.7.1** 사용자는 본인이 관리하는 회사 중요 서류 및 저장매체는 비인가 접근의 방지를 위하여 퇴근 시 시건 장치가 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.

- 3.7.2** 퇴근 또는 자리 이석시 중요 자료 및 저장매체를 방치하지 않고 정리 정돈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.

3.8 비밀번호 운영절차

3.8.1 비밀번호 생성

- ① 비밀번호 최초 생성 시 최소 길이는 8자리 이상으로 하고, 영문, 숫자, 특수문자 중 최소 2가지 조합으로 생성한다.
- ② 비밀번호는 두 자리 이상 연속된 값을 사용 불가하며, 불규칙적인 암호로 생성하도록 한다.

3.8.2 비밀번호 변경

- ① 비밀번호 변경주기는 90일 이내로 하며, 변경하지 않을 경우는 접속을 제한하도록 한다.
- ② 변경할 비밀번호는 직전 2회 변경된 비밀번호는 사용할 수 없다.

3.8.3 비밀번호 분실

- ① 비밀번호 분실 시 즉시 기술담당자에게 보고하고 해당 계정 사용중지 요청을 한다.
- ② 비밀번호를 새로 발급하고자하는 경우는 비밀번호 발급사유서를 작성하여 기술보안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고 본인확인을 거쳐 발급받도록 한다.
- ③ 새로 발급할 임시 비밀번호는 연속되지 않는 임의의 숫자, 대/소문자가 포함된 임의의 문자 및 특수문자가 모두 포함되어 8자리로 생성되도록 한다.

3.8.4 관리자 패스워드 유지관리

- ① 관리자 패스워드는 비밀등급으로 관리하며, 해당 업무 시스템의 관리자로서 선임되어있는 자 외에 타인에게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.

	<h1>넥소토</h1>	문서번호 NEX-BO-T-01
개정일: 2025-02	<h2>사용자보안지침</h2>	개정차수: 6

② 관리자 접속정보 등은 비밀등급으로 표기하고 시건장치하여 보관하도록 한다.

3.8.5 모든 사용자 및 이용자 패스워드 유지관리 및 교육

- ① 모든 사용자 및 이용자는 패스워드를 타인이 식별 가능하도록 보관 및 방치해서는 안된다.
- ② 보안담당자는 패스워드 관리절차에 관한 교육을 보안교육 시 실시하도록 한다.

3.9 비인가 소프트웨어 통제 운영절차

3.9.1 통제대상

- ① 사내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업무용 PC 및 서버 등 소프트웨어가 설치될 수 있는 모든 기기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.

3.9.2 통제항목

- ① 개인업무용 PC
 - a. 운영체제 라이선스
 - b. 문서작성 프로그램 라이선스
 - c. 백신 프로그램 라이선스
 - d. 기타 프로그램의 라이선스
- ② 서버
 - a. 운영체제 라이선스
 - b. 데이터베이스(DB) 라이선스
 - c. ERP, 인증서버의 라이선스
 - d. 백신 프로그램 라이선스
 - e. 기타 프로그램의 라이선스
- ③ 특수프로그램
 - a. 도면작성(CAD, CATIA 등) 프로그램 라이선스

3.9.3 모니터링

- ① IT 자산관리 툴 또는 그에 준하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치내역을 확인한다.
- ② 상기 시스템에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 월 1회 불시 샘플링을 점검 한다.
- ③ 연 1회 사내 모든 PC 및 서버의 소프트웨어 전수 검사를 실시하여 비인가 소프트웨어 정리를 실시한다.

3.9.4 위반 시 절차

- ① 비인가 소프트웨어 발견 시 해당 사용자에게 즉시 삭제명령 및 확인한 후 구두

	<h1>넥소토</h1>	문서번호 NEX-BO-T-01
개정일: 2025-02	<h2>사용자보안지침</h2>	개정차수: 6

경고 한다.

- ② 2회 이상 위반 시 보안규정의 항목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.

3.9.5 예외 및 필요 소프트웨어 신청 절차

- ①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외에 및 필요 소프트웨어는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술보안담당자에게 제출한다.
- ② 정보보안그룹에서는 신청 소프트웨어의 업무 연관성, 라이선스 합법성 여부를 판단 후 승인여부를 사용자에게 통보한다.
- ③ 승인 완료된 소프트웨어는 인가 소프트웨어에 목록에 등재하여 관리하도록 한다.

3.10 보안패치 운영 절차

3.10.1 보안패치 범위

- ① 보안패치는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모든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.
- ② 보안패치의 범위는 운영체제, 응용프로그램 등 업데이트가 가능한 시스템에 적용한다.

3.10.2 유형별 보안패치 적용 방법

- ① 서버
 - a. 서버의 보안패치는 운영체제, 응용프로그램은 해당 옵션 설정에서 수동으로 설정한다.
 - b. 서버의 경우 일 1회 점검하여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확인하여 보안패치가 있으면 다운로드를 진행하고 패치 후 관련서버 업무 시스템 담당자와 협의 후 시스템 재부팅을 실행한다.
 - c. 서버 재시작 후 업무시스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테스트한다.
 - d. 재부팅이 필요치 않는 보안패치라 하더라도 업무시스템 정상 동작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.

3.10.3 PC

- ① 사용자 PC의 보안패치는 운영체제, 응용프로그램은 업데이트 설정에서 자동으로 설정한다.
- ② 보안패치 설치 후 기존 업무 시스템 및 대외 업무시스템 접속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한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한다.
- ③ 보안패치 후 업무 시스템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기술보안담당자에게 알리고 조치를 받는다.

	<h1>넥소토</h1>	문서번호 NEX-BO-T-01
개정일: 2025-02	<h2>사용자보안지침</h2>	개정차수: 6

3.10.4 방화벽, 공유기, 프린터 등 기타 주변장치

- ① 방화벽이나 공유기, 프린터 같은 주변기기는 수시로 점검하여 제조사의 보안패치 공지나 수동으로 업데이트 등을 확인하여 적용하도록 한다.

3.10.5 업무 영양도 분석

- ① 보안패치를 적용하기전에 패치할 내용을 확인한 후 패치 전과 후 예상되는 변경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도출한 후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한다.
- ② 보안패치 실행 전 업무 시스템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예상이 된다면 사용자에게 사전공지를 하고 변경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.

3.10.6 모니터링

- ① 기술보안담당자는 보안패치 현황을 서버, PC, 기타주변장치등으로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한다.
- ② 기술보안담당자는 보안패치가 정상 동작하는지 불시에 점검하고 패치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지원해야한다.